

2001년 송영길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

Me13
인권정보자료실
Me1.3

성전환자의 인권과 호적 정정

2001.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송영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505호
TEL:(02)788-2006, 784-1263 FAX:(02)788-3505
Home page : <http://www.bull.or.kr>

인권정보자료실

2001년 송영길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

성전환자의 인권과 호적 정정

2001.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송영길

1905

성전환 환자의 법적 지위

1905

성전환 환자에 대한 법적 태도

■ 목 차 ■

(본문) - 자료집을 발간하며

- 1. 머리말
- 2. 성전환 실태
- 3. 성전환자의 현실
 - (1) 사회생활
 - (2) 가정생활
 - (3) 직업생활
 - (4) 범생활
- 4. 성전환의 개념
 - (1) 성전환자
 - (2) 성전환증
 - (3) 반음양
 - (4) '성적 지향'과 관련된 다른 용어와의 구별
- 5. 의학적으로 보는 성전환증
 - (1) 성전환증의 논의 배경
 - (2) 성전환증의 원인
 - (3) 성전환증의 치료
 - (4) 성전환 수술의 기준
 - ① 외국의 경우
 - ② 국내의 경우
- 6. 성전환에 대한 각 국의 법적 태도
 - (1) 긍정적 입장
 - ① 독일
 - ② 프랑스
 - ③ 미국
 - ④ 네덜란드

(2) 부정적 입장

- ① 일본
- ② 영국

7. 성전환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태도(판례를 중심으로)

- (1) 성전환의 법적 인정
- (2) 성전환의 법적 불인정
- (3) 대법원의 입장

8. 성별정정의 판단근거 검토

- (1) 성염색체의 구성
- (2) 성선·외부성기 등 신체기관
- (3) 심리적·정신적 성
- (4)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성역할

9. 성전환자의 인권

- (1)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 (2) 혼인의 자유
- (3) '도덕적 소수자' 보호

10. 성전환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설문결과 중심으로)

11. 맺음말

[첨 부 1] 한국갤럽 <성전환자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첨 부 2] 성전환자 호적정정 신청 항고 기각 결정문

(광주지법 95브10)

[첨 부 3] 호적정정 신청서 및 수기

자료집을 발간하며

요즘 대중매체에 성전환자에 대한 주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성전환 연예인이 안방극장에까지 출연하는 걸 보니 사회가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내포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는 흐르는 물처럼 구성원인 인간의 생각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로 과거에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환자들이 의료기술을 통해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을 정신문화의 집결체인 제도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법적 공백상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전환자의 인권과 호적정정 문제에서 이런 공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현실이 된 성전환자들을 성숙한 포용력과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창조적 법해석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공백상태를 메움으로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성전환자의 인권과 호적정정」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 발간이 성전환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지고의 헌법적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1년 9월

국회의원 송영길

1. 머리말

성전환에 대해서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사회가 개방화·다원화되면서 공개적으로 성전환 사실을 드러내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안방에까지 성전환 연예인이 등장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중의 호기심에 편승한 상업주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기는 하지만, 성전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넓히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만은 부인할 수는 없다. 인터넷상에서도 성전환자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많았는데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네티즌의 태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전환자에 대한 거부감은 일차적으로 성에 대한 보수적 시각에서 비롯된다. 다수와 다른 소수의 목소리가 외면 당해왔던 역사 속에서는 특히 금기시되었던 성전환자는 더욱 소외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법은 사회공동체가 내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그 구성원의 다양한 행동양식과 행동목표를 일정한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일체감과 연대의식에 의해 하나로 통합시키는 수단이다. 사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인간의 생각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 내에서도 각각의 사회를 살펴보면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사회와 사고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 그 만큼 사회공동체 구성원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포용력과 인간주의적 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과거의 주류적 사고와 관습적으로 대물림되었던 사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미 성환자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현실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사회공동체의 포용력으로 이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이 자료집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문제를 인권보호 측면에서 제기하고자 한다.

2. 성전환 실태

후술하겠지만, 의학적으로 성전환자는 '성전환증'이라는 질병을 가진 환자로 다루어진다. 성전환증의 유병률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외국의 경우 대략 남자환자는 3만 내지는 5만 명당 1명, 여자환자는 10만 명당 1명 정도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통계자료는 없지만 외국의 유병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략 천 여명 이상의 성전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성전환증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당사자나 또는 주변인에게도 민감한 사안이므로 객관적으로 취합된 자료는 없으나,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가 우리 나라에 대략 100여명(불법시술제외)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 중 80% 이상이 남성 성전환자(MTF)로서, 성을 여성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성의식이 개방되고 사회인식이 관대해지면서 성전환수술을 통해 자신의 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록에 의하면 해외 특히 일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에서는 몇몇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성전환 전문 클리닉도 등장하고 있으며 성전환자들이 익명성을 보장받고 손쉽게 상담할 수 있는 인터넷 의학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성전환수술을 결심하고 그 준비단계에서 실제 수술이 시행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된다. 수술비용은 성전환수술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

는 호르몬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포함하여 총 2000여 만원이 드는데(성전환수술만 1000만원), 새로 획득한 성에 더욱 가까운 외모를 가지기 위한 성형수술은 별도이다.

그러나 주위에 알리기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의 대부분이 은밀하게 자신의 성기를 바꾸려고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위험과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¹⁾

3. 성전환자의 현실

(1) 사회생활

성전환자들은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배척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 그리고 비도덕적인 정신병자로 비난받을지 모르는 불안으로 늘 고통에 시달린다. 그리하여 성전환자 가운데 50~70%가 인격장애, 즉 경계성·정신분열성·히스테리성·반사회성 인격장애를 동반하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성전환자 중에서 상당수가 이차적인 우울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당혹감이나 이질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 등에서 비롯되며,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없는 데서 생기는 문제점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 이들은 자살을 기도할 정도의 심각한 우울상태를 보이기도 한다.²⁾ 이러한 점에서 성전환자가 가장 원하는 바는 '보통사람들 속에 섞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 김성수, "의학적 입장에서 본 성전환-성형외과 측면", 의협신문, 1990.8.27, 11면
2) 최병무, "성전환증의 진단 및 치료", 신경정신의학, 1993.07(제32권 4호), 120면

(2) 가정생활

성전환자 중에서 상당수는 해부학적 성과 같은(즉,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르면 이성인) 사람과 동거생활을 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동거생활 중이다. 그러나 이들의 동거 의도는 일반인의 동거 의도와 구분해서 생각하여야 한다. 성전환자에게는 정상적인 결혼과 가족의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전환자의 대부분은 성장과정에서 보이는 특이한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으로부터 자주 소외를 당하며, 심지어는 가족과 결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의 마련이 일생의 꿈이 된다. 이들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처럼 혼인신고를 하고 보통의 가정을 이루어 평범하게 살고자 하지만, 호적상 성별정정이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숙원은 그냥 숙원인 채로 남겨진 상황이다.

(3) 직업생활

성전환자, 특히 남성 성전환자들(MTF) 중 다수는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 이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직업이 유흥업소를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대부분의 중등교육기관이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 이들이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상위의 직업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성전환자들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위한 거액의 수술비를 모으려고 자진해서 유흥업소에 나가게 된다. 결국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는 어렵다. 이것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경우에도 성전환자가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잘 보여준다.

(4) 법생활

사실상 앞의 (2)과 (3)번 문제들은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사회의 성적 억압의 기제가 많이 풀어지고 다양성이 인정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성전환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성전환수술을 특수한 성형수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성전환수술 이후에 뒤따라야 할 호적상 성별정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성전환자는 성전환수술 이후 생식능력을 제외한 새로운 해부학적 성을 획득함으로써 성적 정체성과 신체적 정체성의 일치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는 성전환자를 새로운 절망에 빠뜨린다. 그들은 취직을 하고 은행업무를 보고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등의 많은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청 받는 때 순간마다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남성 성전환자(MTF)의 경우 병역문제가 발생한다. 외관상의 변화(가슴발달 등)가 뚜렷한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병역을 면제받지만, 외관상 성전환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복무는 성전환자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군 입대 후 부적응으로 인하여 조기 전역(불명예제대)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호적상 남성으로 살아가야 할 경우, 사회로부터 받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 다른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법상 강간죄와 관련된 것이다. 여성으로 성전환한 자가 남성 2인에 의해 성폭행 당한 사례에서, 대법원³⁾은 성폭행피해자인 성전환자를 부녀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들

3) 대법원 판례 96도791(1996. 6. 11)

에게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과 같이 강간죄 성립의 대상을 부녀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4. 성전환의 개념

성전환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낯선 말이다. 전통적인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선천적으로 한 번 결정된 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 세계에서 성전환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문화인류학·사회학·역사학의 연구를 살펴보면 인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현상이 종종 있어 왔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성전환자

‘성전환자’란 영어권에서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 또는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⁴⁾이라고 불리는데, 수술이나 기타 다른 치료를 통해 자신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제로 수술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검사나 호르몬검사·염색체검사 등을 통해 수술 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육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Male to Female Transsexual(MTF)’, 육체적으로는 여성

4) “젠더(Gender)”라는 말이 사회적 성(性), 혹은 정신적 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반면, “섹스(Sex)”라는 말은 육체적 성의 의미를 더 함유하고 있으므로, 트랜스섹슈얼이라는 말보다는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더 선호되고 있다.

이지만 남성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Female to Male Transsexual(FTM)’이라고 부른다. 이는 개인의 성 정체성의 혼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적 취향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2) 성전환증

학문적으로 성(Sex)은 유전적인 성(genetic sex), 성선 성(gonadal sex), 체성 성(somatic sex), 표현형 성(phenotypic sex), 법률적 성(legal sex), 및 정신적 성(psychological sex)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은 상기의 6가지 성이 일치되어 개인의 성이 결정되고, 그에 맞는 성역할(gender role)을 하게 된다.⁵⁾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6가지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질병분류(ICD-10)에 의하면,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란 자신의 해부학적 성을 불편하고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자신과 반대되는 성으로 살고 또 반대되는 성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신이 선호하는 이성의 몸에 가능한 한 일치되도록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고자 하는 증후군으로 성적 동일성 장애의 일종이다. 이는 정신분열증과 같은 다른 정신장애와는 구별된다.

소아들은 종종 반대 성의 놀이, 행동, 태도, 복장 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사춘기 이후로도 성정체성 장애가 지속되는 소수만이 성전환증 환자가 된다.

성전환증 환자는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 매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반대의 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미루어 소아시기에 병인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5) 이무상·김세중·이종진, “남성 성전환증의 치험 및 수술조건 설정”, 대한비뇨기과학회지, 1991.10(제32권 제5호), 768면

여지가 많다. 호르몬 혹은 신경계통과 같은 생리학적 요인 또는 부모의 정신질환이나 부모 중 한쪽의 결혼 혹은 비정상적 가족관계와 같은 양육적 요인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며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다.⁶⁾

(3) 반음양(혹은 간성, 중성)

반음양(Intersexuality)이란 성염색체, 성선의 성, 내분비학적 성, 표현의 성과 성적역할 등의 성 결정 기준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성선의 분화와 성장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여 한쪽의 성이나 양쪽 성의 성선을 가지면서 성기관의 기형적 분화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반음양은 자신의 해부학적 성을 불편하게 느껴서 성의 전환을 원하는 성전환증과는 다른 것이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출생시 확인된 성과 다른 성이 선택된 경우에는 성 전환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통상은 성염색체와 성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한다.⁷⁾

(4)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다른 용어와의 구별

사회의 성 의식이 점차 개방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성적 취향과 관련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성전환자들을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자들로 봄으로써 이들을 사회의 도덕·윤리의 기강의 해이와 관련지어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히 따지면 성전환자의 문제는 성적 취향과는 별개이다.

6) 이무상외, 위외글, 771면

7) 홍춘외, "성전환과 호적정정", 판례월보, 1996.05, 18-9면

성전환자를 다른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용어들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용어간의 혼동으로 이렇듯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혼란 것이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나 동성애자와 혼동하는 것이다.

다음 용어들을 살펴보면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리라 본다.

① 동성애자(Homosexual)

생물학적으로 같은 동성에게 육체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같은 남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남자 동성애자를 게이(Gay),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같은 여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Lesbian)이라고 부른다. 이는 단순한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을 가리킬 뿐, 성전환이나 반음양 같은 성 정체성의 혼란(gender identity disorder)과는 다르다.

② 이성복장자(Transvestite)

반대 성의 복장과 외모를 취함으로써 해서 성적인 혹은 감정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이성의 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복장이나 외모를 하는 남성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 동성애자보다는 이성애자인 경우가 많으며, 여성 호르몬을 맞거나 부분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단순히 좀 더 완벽한 상대성의 모습을 가지려는 목적의 한 방편일 뿐, 자기 스스로의 육체적 성에 대한 거부감 내지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없으며 단순한 성적 취향의 일종이다.

③ 쉬 메일(She-male)

아직 한국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은 성 정체성으로서, 성적 다양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문화로 발전된 나라들에서 보여지는 특정한 문화 속의 사람들인데, 육체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기는 그대로 간직한 채 가슴과 외모만 여성의 모습을 갖게 하여 남성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 것이다. 대부분 매춘업을 하거나 포르노 그라피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다.

④ 여장배우(Female Impersonator)

연극이나 각종 문화행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하는 남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좀 더 완벽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무대에 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노래·춤·연기 등 여러 가지 예술적 재능을 갖추고 그것을 관객에게 표출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한다. 성적 정체성의 혼란, 혹은 성적 취향과는 관련이 없는 표현이다.

⑤ Gender Bender

역시 보수적인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성 정체성의 하나로서, 전통적인 이분법적 성 구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이들은 공공연하게 남성과 여성이 혼재된 모습을 과장하여 보여줌으로써 저항의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여성 복장을 하고 수염을 기르거나 수염을 달고 가슴이 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전통적인 관습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저항의 행위로 간주되며, 가수나 연기자들 중에 몇몇 Gender Bender가 있다. 그들은 공연 중에만 Gender Bender의 모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

생활에서도 그 모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이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 이성애자일 수도 있다.

5. 의학적으로 보는 성전환증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성전환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성 주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성전환수술이 합당한가 혹은 불가피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1) 성전환증의 논의 배경

기록상 1920년대 유럽지역에서 최초로 성전환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유럽지역에서 개최된 운동경기 및 올림픽경기에서는 여성으로 변신했을 지도 모르는 소련이나 동구권 선수들의 기량 문제가 시뮬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한다.⁸⁾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호르몬의 투여에 의한 성전환(내지 성적 특징의 변화)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신의학계에서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미국 존스홉킨스(Johns Hopkins) 의과대학의 '성 정체성 진료소(Gender Identity Clinic)'에서는 1977년까지 약 25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⁹⁾

8) 윤가현, 『문화 속의 성』, 학민사, 2001.7.20, 274면

9) 윤가현, 『성심리학』, 성화사, 1990, 189면, 192면

(2) 성전환증의 원인

성전환증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나, 법적으로 '성전환을 인정할 것인가'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동물의 경우 물고기 등에서 생식기능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성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육상척추동물의 경우에는 암수의 해부학적 차이가 커서 성전환이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어렵고, 유일한 예외가 닭의 경우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물론 이와 다르다. 선천적으로 생물학적 이상이 있는 반음양의 경우에도 그것이 생식기능과 관계가 없음은 물론 자연스러운 성의 전환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생물학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반대의 성과 동일시하는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다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고 있지 못하다. 다만 그중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떤 특정한 취약성을 가진 소아가 성 주체성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에 극단적으로 한쪽 성에 고착된 결과라는 것이다. 또 이 시기에 부모가 반대성의 행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또는 조장하는 것이 성전환을 촉진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가설도 제시되고 있다. 성전환자들의 개인적 생활사들을 참작해 볼 때 이와 같은 설명은 다소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역시 성전환증에는 생물학적인 원인 외에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에 따라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정신치료가 반드시 수반될 것이 권고되고 있다.

(3) 성전환증의 치료

성전환증 환자의 치료에는 정신치료, 행동치료, 호르몬치료 및 성전환수술이 이용된다. 우선은 정신과적 치료가 선행되어야겠으나 정신과 치료만으로 모두가 자신이 지향하는 성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전환을 원하는 성전환자들에게는 그 생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성전환수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에 있어서 성전환증자에 대한 치료는 1970년대 이후 성전환수술 기법이 발달하여 수술 자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수술 후의 사회적응의 결과도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63년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에 최초로 '성적 동일성 클리닉'이 개설된 이래 세계 각 국에는 성전환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정식의료 기관이 설립되어 성전환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4) 성전환 수술의 기준

남과 여라는 성별은 수태되는 순간에 결정된다는 것이 현재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타고난 성을 바꾼다는 것은 성을 바꾸는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 차원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성전환수술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추구권을 향유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성전환 수술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법질서를 위반하는데 악용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전환수술에 대한 명확한 허용기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1969년 존 홉킨스대학의 '성 주체성 위원회'에서는 성전환수술을 시행 받는데 필요한 7가지 조건을, 1973년 에드절튼 및 메이어는 10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전환증 환자 치료기관

에서는 1979년 Harry Benjamin International Gender Dyaphoria Association("HBIGDA")가 내놓은 6가지 조건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¹⁰⁾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권위 있는 기준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고, 다만 1990년 8월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 성전환증에 대한 외과치료의 적응증으로 제시한 12가지 조건이 참고되고 있다.

① 외국의 경우

HBIGDA에서 제시한 지침이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전환 수술 진단의 전제조건

- a. 두 명의 사회과학자(이 중 한 명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진단에 참여해야 한다.
- b. 그 중 한사람은 환자를 6개월 이상 알고 있어야 한다.
- c. 환자는 2년 이상 잘못된 육체 속에 살고 있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성전환 수술의 허용기준

- a. 두 명의 행동과학자로부터 수술을 추천하는 문서가 있어야 하고 그 중 한 명은 6개월 이상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 b. 일년 이상 반대의 성으로 성공적으로 살아야 한다.
- c. 반대 성으로 살 동안에 법적, 사회적, 심리적, 성적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이어야 하고 호르몬 요법도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

10) 이부상외, 위의학, 771면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SM-IV)』에 의하면 트랜스섹슈얼리즘이나 트랜스젠더리즘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대신 정체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아직 트랜스섹슈얼리즘이나 트랜스젠더리즘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이성으로의 성인식이 강력하고 계속될 것(단순한 이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 또는 이성의 사회문화적 욕구나 행동은 함되지 않음)
- b. 자신의 해부학적 성과 성역할에 대해 계속 불편하고 부질질하게 느낄 것
- c. 생물학적 간성(반음양)에 의하지 않을 것
- d. 이런 문제가 임상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중요 활동에서 장애나 걱정, 불안, 부적응 등의 원인이 될 것

② 국내의 경우

1990년 8월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 제시한 12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다.

- a. 근본적으로 정신과질환이므로 정신과에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 b. 정신과적 치료가 상당기간 지속하여 왔으나 성과가 없어야 한다.
- c. 수술 전에 바꾸고자 하는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 d. 다른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없어야 한다.
- e. 수술 전에 바꾸고자 하는 성에 대한 호르몬치료를 이미 상당기간

동안 지속하여 왔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없었어야 한다.

- f. 나이가 21세 이상으로 사춘기를 지났어야 한다.
- g. 신체외형이 바뀌고자 하는 성에 어울려야 한다.
- h. 한가족의 성전환수술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
- I. 불임에 대한 배우자나 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j. 약물이나 술에 대한 습관성이 없어야 한다.
- k. 범법기록이 없어야 하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 l. 환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또한 이상의 적응증에 모두 맞으면서 정신과전문의의 복수추천을 권장함으로써 외국의 예보다 엄격한 환자의 선정을 제시하였다.¹¹⁾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요건이 어느 정도로 지켜지며 그 시행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세브란스병원의 성전환증 클리닉에서 성전환증 수술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2년 이상의 성전환증에 해당되는 생활양상을 보이고 있을 것
- b. 6개월 이상의 정신치료과정을 거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전환증세를 유지하고 있을 것
- c. 다른 정신질환이 없을 것
- d. 만 20세 이상의 성년으로 자기 의사 결정능력이 있을 것
- e.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을 것

11) 이무상의, 위외글, 771면

6. 성전환에 대한 각국의 법적 태도

(1) 긍정적 입장

스웨덴은 1972년, 독일은 1981년, 이탈리아는 1982년, 네덜란드는 1985년, 터키는 1988년에 성전환자에 대한 법제화가 통과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① 독일

1980년 9월 10일에 독일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전환증환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베를린이 성 연구자 마그누스 히르쉬펠트(Magnus Hirschfeld)가 1918년 최초로 성전환수술을 개괄적으로 보고한 이래, 성전환수술 및 그 효과가 합법화되기까지 60년 이상이 소요된 것이다.

성전환증자의 호적정정에 대하여 초기의 독일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1970년 9월 8일의 베를린 고등법원의 판결은 신체적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요인이 성별 변경에 대하여 고려된다고 하면서 성전환증자를 심리적 반응양으로 취급하여 신분법상의 정정을 인정하였다. 이후 1980년 9월 10일에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이름의 변경 및 성의 확인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Änderung der Vornamen und Feststellung der Geschlechtszugehörigkeit in besonderen Fällen vom 10. september 1980)”을 통해 성전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이 법률은 제4장 18개 조문으로 제1장에서는 이름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성 귀속의 확정, 제3장에서는 법률의 개정, 그리고 제4장에서는 경과 및 종결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의 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전환증적 특징에 의하여

이미 출생등록부에 기재된 성에는 속하지 않고 반대의 성에 속해야 한다. 둘째, 3년 이상 그 외관에 대응한 생활을 부득이하게 해 왔어야 한다. 셋째, 성전환증자는 기본법상의 독일인, 동법 시행지역 내에서 거처를 가지는 무국적자 내지는 주소를 가지는 비호권향유자(庇護權享有者) 내지는 외국인 도망자이어야 한다. 넷째, 다시 다른 성으로 재 전환되지 않을 것이 고도의 개연성에 의하여 추측되어야 한다. 다섯째,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여섯째, 혼인하지 않았어야 한다. 일곱째, 계속하여 생식이 불가능해야 한다. 여덟째, 성의 외관상의 특징을 변경하는 외과적 수술을 받고 그에 의하여 외견상 반대 성에 명백히 근사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¹²⁾

그러나 이후 1993년 1월 26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5세라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현재 18세 이상이면 호적정정이 가능하다.

② 프랑스

1990년 5월 21일 판결에서 성전환을 이유로 한 신분증서의 변경을 각하함으로써 성전환에 수반되는 민사신분상의 성 변경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랑스 법원의 태도는 유럽인권재판소의 1992년 3월 25일의 결정에 의하여 유럽인권조약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인 제8조에 위반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인권재판소는 “원고는 사생활의 존중과 양립하기 어려운 전체적인 상황 중에 일상적으로 놓여 있다. 따라서 각 국의 재래법위를 고려해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이익과 개인이익 사이에 있어서 조정되어야 할 균형의 파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제8종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난 후에 프랑스 파헤원(破毀院)

12) 홍춘의, 위의글, 20-21면

은 프랑스 민법 제9조, 제57조, 유럽인권조약 제8조13)를 참조 조문으로 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치료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과적·외과적인 처치의 결과 성전환증상을 가진 사람이 처음의 성에 수반되는 특징을 전부 가지지 않고 그의 사회적 행동과 일치하는 반대의 성에 근접하는 신체적 외관을 가지게 된 때에는 사생활 존중의 원칙에 의하여 그 이후 그 사람의 민사신분이 그의 외관에 따른 성을 가리키는 것은 정당하다.”

프랑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성의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성 변경의 원인이 당사자의 실제적인 성전환증에 있어야 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치료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수술의 결과 성전환증자가 반대의 성에 접근하는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¹⁴⁾

③ 미국

미국의 15개 주에서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출생기록부상의 성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리노이즈주와 루지아나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¹⁵⁾

미국에서 성전환수술이 문제된 첫 번째 사건인 *Anonymous v. Weiner* 사건을 보면 미국도 초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

13) [Article 8] ①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② There shall be no interference by a public authority with the exercise of this right except such a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or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countr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14) 홍춘의, 위의글, 19-20면

15) 조희대, “남녀의 성전환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법조 제488호(1997.5), 178면

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가 뉴욕시 보건위원회에 새로운 출생증명의 발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뉴욕시 의학학회에 자문을 구하고 부인병학자, 내분비학자, 세포유전학자, 정신병학자 그리고 법률가들의 견해를 수집하여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은 외관상 여성이기는 하지만 성염색체 상으로는 여전히 남성이다. 심리학적 병자들의 사회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이나 출생증명서와 같은 기록들이 변경되어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당위원회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출생증명서상의 성의 변경에 반대한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게 있어 성을 변경하려는 감추어진 욕망보다는 자기 등으로부터 공공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요청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판사는 “뉴욕시 보건위원회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우며 위법한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뉴욕시 보건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위 판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Pecora판사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성 성전환자는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사실상 여성이다. 이 사람은 반대의 성의 일원으로서 옷 입고 행동한다. 그 환자가 법원에 출석한 경우 그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를 다른 어느 여자와도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람의 동일성의 문제가 인간의 뇌, 성적 지향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능이나 반작용, 본래 특유한 많은 것에 책임이 있는 기관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단순한 역할 논리학적 부분이나 생화학적인 분석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할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적 성과 해부학적 성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그 개인의 사회적인 성별은 해부학적 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의학적인 개입에 의하거나 그러한 개입 없이 심리학적 성과 해부학적 성이 일치된 경우에는 그 개인의 사회적인 성별은 그 일치된 상태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로써 점점 인간의 성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염색체만을 문제삼는 입장이 위축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가 유효한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976년 M.T. v. J.T. 의 판례가 있다. “그 환자의 심리학적 선택이 의학적으로 보아 일시적 변덕이 아닌 건전한 것이고 이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성전환수술이 행해졌다면, 사회는 그 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다. 우리는 그를 써커스 쇼에서의 전시관으로 볼 것인가? 도대체 그가 사회에 무슨 해악을 끼쳤는가? 성전환증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의 본래 모습과 모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고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전환증 환자의 해부학적 외부성기의 모습이 그 사람의 성역할과 정신적·심리적인 성에 맞게 고쳐졌다면 우리는 어떠한 법률적 장애나 사회적 금기 또는 공서양속의 이유도 최소한 결혼을 위한 목적에서의 그의 성을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성전환증 환자의 성과 성기는 수술로 인하여 일치되고 더 이상 불일치가 없다. 그리고 바뀌어진 성역할에 따라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결혼을 위해서는 여성의 일원이다. 그 결과 원고는 그 반대의 성인 남성과 유효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일단 심리학적·사회적·생물학적 요소들이 조화를 갖추게 되면 성전환 후에 있어서는 법률상 그 획득한 성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네덜란드

1985년 성전환을 법제화하였다. 법적인 성 전환수술의 절차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곳의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대

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우호적이다. 1975년부터 1992년 사이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네덜란드인들 중에서 남성들이 여성의 약 3배 정도였으며, 남성들은 25세에서 30세 사이 그리고 여성들은 20세에서 25세 사이에 가장 수술을 많이 받았다. 전체 인구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인구의 비율은 네덜란드가 거의 세계최고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¹⁶⁾

(2) 부정적 입장

① 일본

일본에서는 1970년 11월 11일 동경고등재판소 판결이 성전환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판결 당시에 일본에서 성전환수술이 의학계에서조차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점,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의 질병의 확인에 필요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형법상 상해죄가 아니라 일본의 위생보호법상의 생식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금지규정의 위반이 문제로 되었다는 점등에서 사건의 특수성이 있다.

이와 달리 동경가정재판소에서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장녀’에서 ‘장남’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법원과 같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영국

1970년 성전환자의 결혼에 관한 Corbett v. Corbett 사건을 보면 남자와 결혼한 성전환자(MTF)의 결혼을 무효로 결론 내리고 있다.

“피고는 XY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남성 성염색체인 사실, 수술

16)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 학지사, 1998

전에는 고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남성생식기인 사실, 여성 내외부성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남성 외부성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남성 외부성기인 사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는 성전환증인 사실을 보이고 있다. 그 외관은 완전히 여자에 가깝다. 그러나 결혼은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결혼이 유효한지는 피고가 여자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결혼이라고 불리는 관계가 본질적으로 이성간의 관계인 점에 비추어 그 기준은 생물학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성에게 있어 가장 극단의 성전환증이 있거나, 남성 성염색체, 남성 생식기, 남성 외부성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극심한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 그 어느 경우도 결혼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본질적인 역할을 자연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법률상 우선 의사들이 제시한 기준들 가운데 처음 3가지 즉 성염색체, 내부생식기, 외부생식기의 기준을 채용하여 이 세 가지가 일치하면 결혼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의 그 성별은 결정되고 수술 등 다른 사실의 개재는 무시하여야 한다. 사람의 생물학적인 성 구성은 늦어도 출생 때까지는 결정되고 반대 성기관의 자연적인 발달이나 의학적 외과수술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의사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그러므로 피고에 대한 수술은 진실한 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7. 성전환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태도(판례를 중심으로)

우리 호적법 제5장에 호적정정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제120조를 보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遺漏)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그러나 성별의 구분 기준에 관하여는 법률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쪽의 성에 속하고 이러한 남녀 양성의 불가변성은 현대 법 실존의 기초로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법질서도 역시 남녀 양성의 구별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성전환의 문제는 인간은 남녀의 어느 쪽이든 태일적이고 불가변적으로 편입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현행 법실존에 광범위하게 관련되는 법률문제이다.

성전환이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민법의 영역이다. 민법의 영역 중에서도 성전환의 문제는 친족관계, 혼인법, 친자법 등 가족법의 핵심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사건에서 각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사회적 법률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1) 성전환의 법적 인정

성염색체와 외관상의 성별이 다름으로 해서 호적정정을 허가한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4건이 있었다. 1건의 호적정정 판례가 더 있으나 이는 성염색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의 내용이라 할 수 없다. 그 1건을 제외한 4건의 판결은 ①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0. 4. 19. 90호파71, ②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5. 02. 18. 94호파1057, ③ 춘천지법 원주지원, 1996. 07. 25. 96호파107, ④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6. 10. 17. 96호파488이다. 이 중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90호파71에서 그 판결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외부성기구조 및 정신과학적 상태로 볼 때 여성과 다를 바 없고, 현실적으로 여성이 된 만큼 사회적·법률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유전학상의 염색체에 의한 성구분을 중시하는 견해도 있으나 정신이나 신체가 완전한 여성인데도 호적에 계속 남성으로 남아 있을 경우 군입대 등 사회생활이나 법적 권리·의무행사에서 불편이 크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

(2) 성전환의 법적 불인정

위의 네 건을 제외하고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한 판결문의 요지는 하나같이 성전환자의 성염색체를 이유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불허하고 있다.

1987년 10월 12일 서울가정법원(87호파3275)에서는 딸 길모양의 성별을 남으로 정정해달라는 어머니 이씨의 호적정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이씨는 항고하였는데 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보건대, 항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사건 본인이 남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편철된 세포유전자분석결과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염색체의 형질이 46,xx로서 여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가정법원, 1987.12.12. 87브140)

또한 1995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95브10)에서 내린 판결의 요지를 보면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호적제도 하에서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생학적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항고인이 성염색체의 구성에 있어 정상적인 남성의 성염색체구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변성증(성전환증)이란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데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유만을 가지고 곧바로 법적 인 성을 결정하는 호적상의 성을 '여'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3)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여성으로 성전환한 자가 남성 2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건에서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남녀의 구별은 성염색체를 기본적 요소로 하여 내외 생식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⁷⁾.

8. 성별 정정의 판단 근거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 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적인 성을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법률상에는 남녀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학적 생물학적 요소 가운데 성염색체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아래의 여러 구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있다.

(1) 성염색체 구조

일반적으로 인간은 수정과 동시에 그 성이 결정된다. 정상적인 경우 성염색체가 XY이면 남성, XX이면 여성이다.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17) 대판 1996.6.11 96도 791

성염색체의 구성이 성별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임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 호르몬의 투여 등으로 염색체를 제외한 내부성선까지도 반대의 성으로 변화할 수 있으나 현대의 의학이나 생명공학으로도 염색체는 아직 변화시킬 수가 없으므로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인 기준에 의해 성별을 분류한다면 오직 이 기준, 갈 염색체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대 의학계에서는 염색체만을 기준으로 성을 구별하지는 않는다. 물론 성염색체는 의학적으로 성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성전환증 환자의 경우는 성선의 성, 내분비학적 성, 표현의 성과 정신·심리학적 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앞에서 제시한 호적정정이 인정된 성전환 사례에서도 병원 측의 성별 감정서는 예외 없이 새로운 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더구나 인간의 사회생활을 다루는 법적 판단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이나 심리적 상황을 뒤로한 채 생물학적인 성염색체만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법의 사회적 역할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성선·외부성기 등 신체기관

남성의 경우에는 성선(내부생식기)으로 고환, 외부성기로는 음경이 있어야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성선으로 난소와 자궁, 외부성기로는 질과 음순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선이나 외부성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다. 역성(성염색체는 XX이면서 외부성기 모두 남성인 경우를 즉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고, 이 밖에도 성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인하여 진성반음양¹⁸⁾, 가성반음양¹⁹⁾, 남성가성반음양²⁰⁾, 여성가

18) 성염색체는 정상이지만 생식선의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고환과 난소를 겸비하고 외성기도 남성기인지 여성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9) 성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인하여 남성에게 여성의 성징이 나타나거나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20) 성염색체가 남성형의 XY이고 성선도 고환이면서 외성기가 여성형 또는 남녀 어느 것으로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성반음양²¹⁾의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외부성기는 성전환수술 과정에서 거의 새로운 성에 맞는 성기로 재생이 가능하다. 다만 생식능력은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임이 새로이 획득한 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반인 중에서도 생식능력이 없는 남·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3) 심리적·정신적 성

각자가 가지는 성 귀속감이나 성역할 등에 의하여 구별하는 경우이다. 대체로 위에서 본 성염색체나 외부적 성징이 남성인 경우에는 심리적·정신적으로도 남성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여성애 각 성귀속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전환증과 같이 서로 반대의 성에 속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성전환증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만으로 본래의 성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성전환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하겠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강조할 때 인간의 이성을 이야기한다. 종교적으로는 영혼을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이 육체적·물질적 존재 이상의 고차원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육체보다 정신을 더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그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여성의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외과적 수술과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 성인 남성으로서 살아야만 한다는 주

21) 성염색체가 여성형의 XX이고 성선도 난소이면서 외성기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것으로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장이 과연 논리적인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4)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성역할

사실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볼 때 성에 따라 역할을 구분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사회통념상 성에 맞는 역할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성전환자의 경우는 타고난 해부학적 성을 거부하고, 반대 성으로의 전환을 갈망하기 때문에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이 지향하는 성역할에 매우 충실하고자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한다. 특히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는 새로이 획득한 성에 만족하고 그에 따른 역할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9. 성전환자의 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으로 본다.²²⁾ 또한 제37조 제1항을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그 밖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적·사회

22) 헌법재판소. 1990.09.10, 89헌마82

적·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듯이 질서유지(사회의 안녕질서), 공공복리(국민공동의 행복과 이익)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환자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동체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전환자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회의 풍기문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전환자는 '성적 취향'과 관련된 동성애자 또는 이성복장자 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성전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성적 취향'은 일반인과 같은 이성애(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반대되는 사람과의 사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많은 성전환자들, 특히 남성 성전환자(MTF)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풍기문란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괴롭게 여긴다. 오히려 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이 허용되면 성전환자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 최근 성전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성전환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환자가 아닌 사람이 성전환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고 있던 성전환자들이 드러난 것뿐이다. 특이한 것을 좋아해서 거짓으로 성전환자를 가장하여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의료적 허용기준을 통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술비용과 회복의 어려움을 볼 때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다.

이미 법적으로 호적정정을 허용한 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법의 실행 이후 성전환자로 인해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접하기 힘들다. 이와 같이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두고 일반인이 우려하는 점들은 그 심각성의 정도나 빈도에 있어서 크게 우려한 바가 아니다. 그에 비할 때, 성전환자들의 유린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생각해 본다면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폭력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혼인의 자유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에 관한 헌법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결혼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현대에 있어서 결혼의 의미는 과거와 같이 종족 보존이나 자녀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로서 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연후에 출산과 육아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고 하겠다.

성전환자들이 결정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고 수술을 결심하는 계기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라고 한다. 외견상으로 보기는 이들의 사랑이 동성애로서 보여지지만 해부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전환자에게는 이성애에 대한 사랑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성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외모를 갖추는 것이 절실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계기로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도 호적상 성별이 정정되지 않는 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쉽사리 혼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서류상의 혼인을 접어둔 채 동거를 하지만,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성전환자의 소망은 성전환수술 후에도 여전

히 멀기만 하다.

혼인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와 같은 헌법상의 문구로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제도적·사회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혼인관계가 단순히 남녀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혼인 및 자녀의 출산을 통하여 국가·사회의 기본 구성요소인 가족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는 생식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들의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태생적으로 가졌던 해부학적 성에 해당하는 생식능력을 사용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서 사회의 기초단위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전환자 중에는 혼인을 해서 자녀를 두고 살다가 뒤늦게 커밍아웃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성전환자가 태생적으로 가졌던 해부학적 성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감추고 살아오는 동안의 성전환자의 어려움과 그 가족의 혼란을 고려한다면 성전환자에게 이 사회가 해부학적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앞에서 즉했듯이 성전환자는 새로이 획득한 성역할에 매우 충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새로운 성을 인정해주고 자유의사에 따른 혼인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사회에도 유익할 것이다.

(3) '도덕적 소수자' 보호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는 우리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자의 지배가 진정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수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자란 '사회구성체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제반 영역에서 인종, 성, 경제적 능력, 사상이나 도덕, 기타의 이유로 지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치와 상이한 입장에 있는 부류²³⁾'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들이 비록 다수의 국민들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바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성전환자는 우리사회의 '도덕적 소수자'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다수의 도덕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병의 하나인 성전환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방해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치료 행위가 국민다수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들을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수용하지 못할 때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의료행위나, 신분서 위조, 사회불만자들에 의한 각종 범죄가 증가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10. 성전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설문결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개방화·다원화되어 가는 추세와 함께, 과거와 달리 공개적으로 성전환 사실을 드러내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는 마스크를 통해 익숙해진 성전환 연예인의 영향력이 컸는데, 그로 인해 최근 성전환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대중의 호기심에 편승한 상업주의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폄하할 수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성전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태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신문이 52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설문을 한 결과를 보면 73.95%

23) 안경환,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리", 법과사회 제2호(1990), 115면

에 해당하는 386명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법률상의 성은 반드시 타고난 생물학적 성이어야 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18.01%인 94명에 그쳤다.

또한 사랑의 전화에서 인터넷으로 설문한 결과에는 62%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허용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는 네티즌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 중에서 설문조사의 경위·방법·내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설문결과를 특히 참고로 하고자 한다. [첨부 1]

11. 맺음말

성전환자의 차별대우는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성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풍기문란을 조장한다고 매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의 성적 주체성, 성적 취향에 대하여 윤리·도덕적 문제를 들어 반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주장도 일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성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그러한 논리 속에 묻혀 버려선 안 된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애정 그리고 성숙한 포용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성전환자는 개인의 성적 취향과는 무관하다. 자신의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불일치한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주기 위한 의학적 치료 방법으로 성전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어떤 치료보다 성전환수술을 원하는 성전환자들에게 근본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성전환 수술은 자연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인간존재의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성전환은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특수한 현상이며 성전환수술은 성전환을 원하는 자들이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선택되어지는 질병의 치료라는 차원에서 의학적 합의를 토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진지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성 결정에 대하여는 멘델 이래 생물학적으로는 염색체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호적제를 함한 법제도는 인간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제도이므로,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한 사회의 일반적 사회통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적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보장하는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민사신분의 불가처분성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 사회 여론도 대체적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견상 완전히 새로운 성의 모습을 갖추고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역할을 다하는 성전환자들에게 호적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호적정정 신청을 기각한 판사들 중에서도 일부는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신청을 허용하고 싶으나 참고할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으로부터 1996년 10월 17일 호적상의 성별정정을 허가 받은 박보경씨는 그녀를 심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해 준 고향분들에게 사회봉사활동으로 보답하고 있어서 의정부 지역의 귀감을 사고 있다. 모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호적정정 판결을 통하여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었다며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를 강력히 호소했다. 그녀가 사회의 양지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해준 주변 사람들과 법원의 결단이었다.

성전환자들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영유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치료의 수단으로써 성전환수술이 강구되는 이상, 이미 반대의 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의 인권을 고려한다면 호적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독일처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첨 부 1] 한국갤럽

<성전환자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한국갤럽은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흥미있는 주제를 선별해 우리나라 전국을 모집단으로 한 조사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성전환 연예인의 등장으로 촉발된 '성전환'에 관한 조사로, 현재 우리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사개요 -

1. 조사지역 : 전국(제주도 제외)
2. 조사대상 :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3. 표본크기 : 1,520명
4. 표본추출 : 무작위추출법
5. 조사방법 : 개별면접
6. 조사기간 : 2001년 6월 23일 ~ 7월 2일
7. 표본오차 : $\pm 2.5\%P$ (95% 신뢰수준)

구분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표본크기	표본오차
전체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2001년 6월 23일 ~ 7월 2일	개별면접	1,520명	$\pm 2.5\%P$ (95% 신뢰수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제외)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학생, 일반직, 전문직, 자영업, 무직				
교육수준	초·중·고졸, 대학졸, 대학원졸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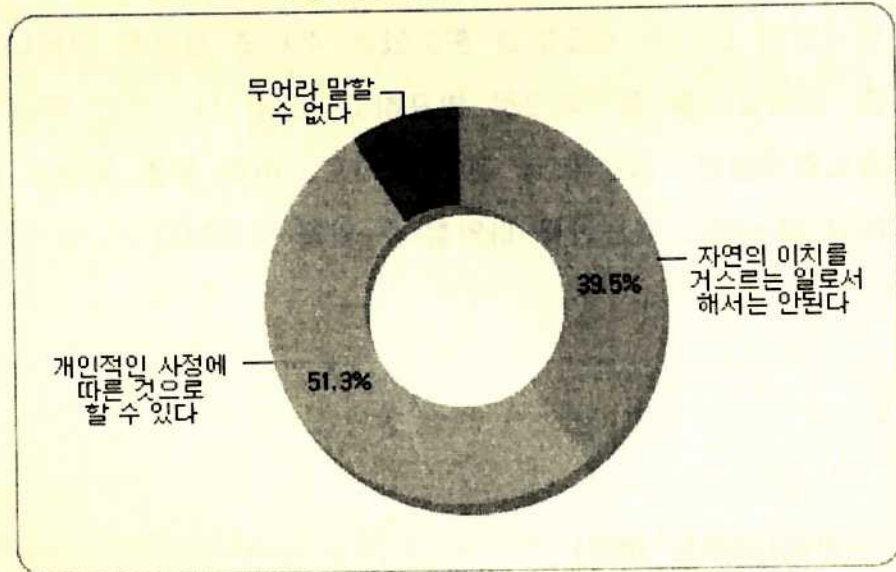
구분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표본크기	표본오차
전체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2001년 6월 23일 ~ 7월 2일	개별면접	1,520명	$\pm 2.5\%P$ (95% 신뢰수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제외)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	학생, 일반직, 전문직, 자영업, 무직				
교육수준	초·중·고졸, 대학졸, 대학원졸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성전환 할 수 있는 일이다', 51.3%

'성전환에 관한 다음의 견해 중 ○○님의 견해는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3%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로서 해서는 안된다'(39.5%)는 부정적인 견해보다 12% 가량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무어라 말할 수 없다'는 유보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9.1%였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저연령/고학력일수록 임의적인 성전환이 자연 법칙에 반기를 드는 윤리적인 성격보다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지우려는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전환 수술에 대한 찬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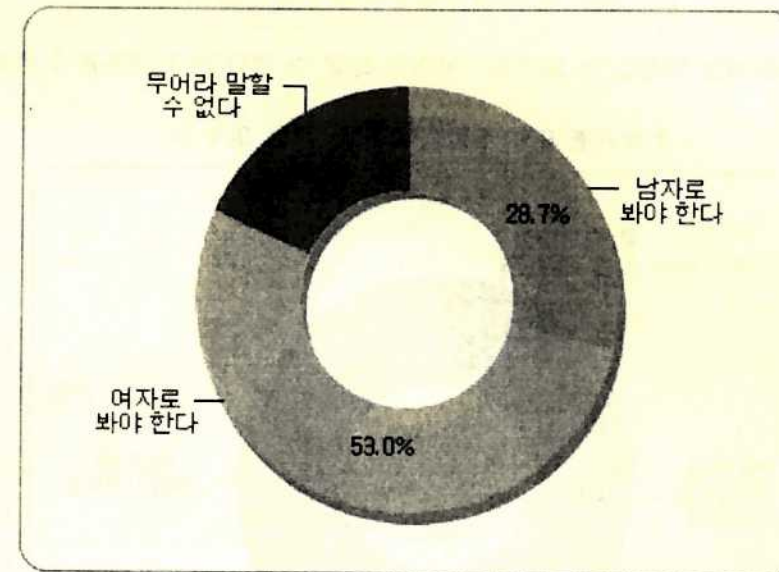
< 성전환 수술에 대한 찬반 - 계층별 >

구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로서 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할 수 있다			무어라 말할 수 없다		
				39.5			51.3			9.1		
전 체				39.5	51.3	9.1						
성 별	남 자			42.0	48.7	9.3						
	여 자			37.1	53.9	8.9						
연 령 별	20대			18.9	71.2	9.9						
	30대			33.2	57.6	9.3						
	40대			44.8	46.8	8.4						
	50세 이상			60.6	30.7	8.7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58.5	32.7	8.8						
	고 졸			38.3	53.2	8.5						
	대재이상			26.4	63.2	10.4						

성전환자, 변화된 성으로 인식해야 53.0%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면 이 사람을 남자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여자로 봐야합니까?' 라는 물음에 2명 중 1명은 성전환 수술 이후의 성인 여자로 인식하고 있는 (53.0%)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저연령/고학력자일수록 두드러졌다. 한편 '남자로 봐야한다'는 28.7%였고 '무어라 말할 수 없다'로 판단이 서지 못한 응답자도 18.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성전환자의 성별 인식 >



< 성전환자의 성별 인식 - 계층별 >

구분				남자로 봐야 한다			여자로 봐야 한다			무어라 말할 수 없다		
				28.7			53.0			18.3		
전 체				28.7	53.0	18.3						
성 별	남 자			30.3	50.9	18.8						
	여 자			27.2	55.0	17.8						
연 령 별	20대			16.9	67.0	16.1						
	30대			27.2	56.6	16.2						
	40대			28.9	51.5	19.6						
	50세 이상			40.7	38.0	21.4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40.7	37.2	22.1						
	고 졸			27.1	56.4	16.5						
	대재이상			21.6	60.2	18.1						
소득수준별	149만원 이하			25.9	56.9	17.2						
	150~249만원			24.8	57.2	17.9						
	250만원 이상			34.4	46.6	19.0						
	모름/무응답			32.3	41.4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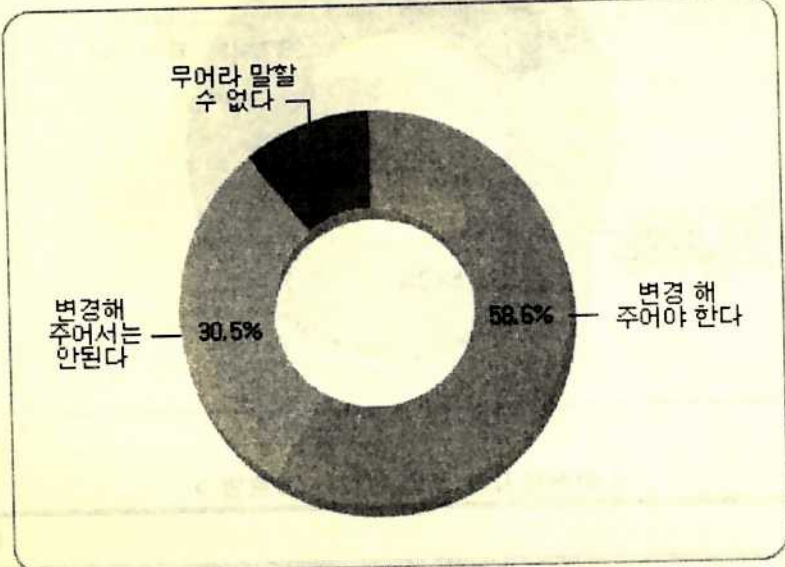
성전환자, 주민등록변경 해주어야 58.6%

현재 성전환자의 주민등록번호변경이 법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성전환자가 주민등록변경을 원한다면 변경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물었더니, 5명 중 3명은 '변경해 주어야 한다'(58.6%)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러한 결과는 임의적인 성전환으로 올 수 있는 사회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여론으로 풀이된다. 저연령/고학력층일수록 이러한 견해가 더욱 짙었다.

한편 '변경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30.5%, '무어라 말할 수 없다'는 10.9%를 기록했다.

< 성전환자의 주민등록 변경 허용 여부 >



< 성전환자의 주민등록 변경 허용 여부 - 계층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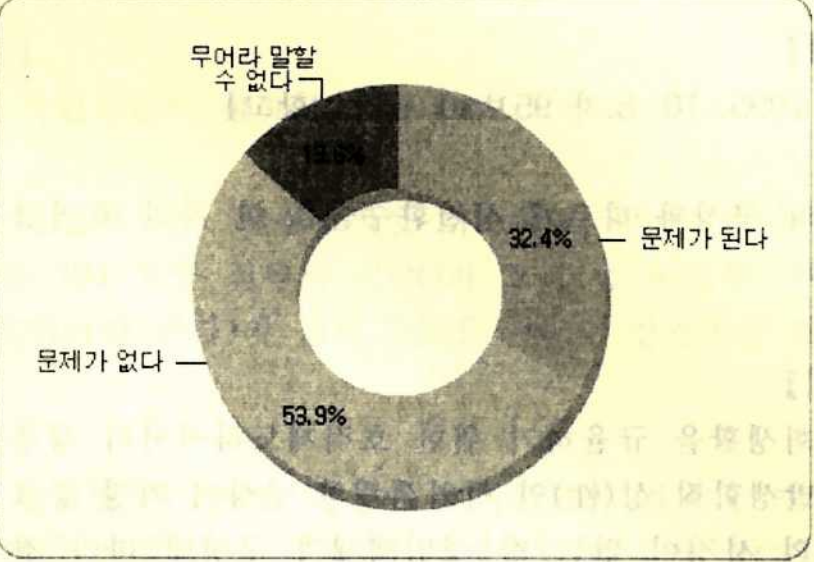
구분		변경해 주어야 한다	변경해 주어서는 안된다	무어라 말할 수 없다
전체		58.6	30.5	10.9
성별	남자	55.1	33.6	11.3
	여자	62.1	27.4	10.5
연령별	20대	71.2	20.3	8.5
	30대	64.1	25.9	10.0
	40대	53.6	33.0	13.4
	50세 이상	45.7	42.2	12.2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46.9	41.6	11.5
	고졸	60.0	29.3	10.7
	대재이상	65.9	23.5	10.7

성전환자의 방송활동, 문제없어 53.9%

'성전환자가 방송연예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혹은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를 물은 결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53.9%)라는 응답이 '그렇다'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교육수준이 주요 영향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저연령/고학력층일수록 문제가 없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 성전환자의 방송활동에 대한 견해 >



< 성전환자의 성별 인식 - 계층별 >

구분		문제가 된다	문제가 없다	무어라 말할 수 없다
전체		32.4	53.9	13.6
성별	남자	34.1	54.3	11.6
	여자	30.8	53.6	15.7
연령별	20대	19.2	67.0	13.8
	30대	27.3	61.2	11.5
	40대	38.2	49.8	12.0
	50세 이상	45.2	38.1	16.6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43.3	38.7	18.0
	고졸	31.4	55.3	13.3
	대재이상	25.3	63.9	10.8
소득수준별	149만원 이하	28.9	61.5	9.6
	150~249만원	30.1	58.2	11.8
	250만원 이상	37.4	45.0	17.6
	모름/무응답	24.8	50.6	24.6

[첨 부 2] 성전환자 호적 정정 신청 항고 기각 결정문

(광주지법 95브10)

【판시사항】

[광주지법 1995. 10. 5.자 95브10 결정 : 항고]

성염색체의 구성과 다르게 성전환수술을 한 자의 호적정정의 허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호적제도하에서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생학적 성(性)인 성염색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다른 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비록 항고인이 출생 당시 확인된 성인 남성으로서의 외형적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여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을지라도, 항고인의 성염색체 구성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남성의 성염색체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증상이나 사유는 정신의학적으로 성적동일성(性的同一性)의 이상(異狀)인 변성증(성전환증)이란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데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유만을 가지고 곧바로 법적인 성을 결정하는 호적상의 성을 '여'라 할 수는 없다.(항고)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재판전문】

광주지법 1995. 10. 5.자 95브10 결정 : 항고

【항고인 겸 사건본인】 이OO

【원심결정】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5. 4. 8.자 95호파453 결정

【주 문】

항고인 겸 사건본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 및 신청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여수시청에 비치된 여수시 중앙동 191 호주 신청의 이OO의 호적 중 항고인 겸 사건본인(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의 성별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이 유】

1. 기록에 편철된 여수시장 작성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은 아버지인 신청의 망 이OO과 어머니인 신청의 강OO 사이에서 1963. 5. 25. 출생하여 항고인의 부가 1966. 3. 24. 항고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항고인의 성별을 '남'으로 신고함에 따라 호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자신의 출생 당시 신체외형상 남녀의 구별이 불분명한 체로 출생하였으나 그 후 여성으로서의 성적(性的) 특징을 보여 여성으로 성장 및 생활하여 왔으며 1993. 4. 8.에 이르러 성전환(性轉換)의 외과적 수술까지 받았는바, 이로써 위 호적상의 항고인의 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를 '남'에서 '여'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한다.

그러므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편철된 의사 김현호 작성의 성별감정서의 기재와 당원의 동아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항고인은 본래 정상 남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염색체의 구성(XY형), 생식선의 조직, 내외성기의 형태 등을 모두 갖추고 남성으로 출생하였는데 성장하면서(10세 무렵) 자신을 무의식 상태에서 남성 아닌 여성으로 확신하여 여성으로서의 행동양식을 보이는 이른바 변성증(성전환증이라고도 한다)의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다가 16세 무렵부터 여성호르몬제를 정기적으로 투여받음

에 따라 외모와 음성 등에서도 여성으로서의 성적 특징이 점차 강하게 나타나게 된 사실, 그러한 항고인은 성년이 되어 방위병으로 군복무까지 마쳤는데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됨에 따라 1993. 4. 8. 에 이르러 남성으로서의 성기(고환과 음경)를 모두 제거하고 여성으로서의 외부성기와 내부성기의 일부인 질 등을 만들어 주는 외과적 수술(여성으로서의 질 이외의 자궁 등 내부성기는 없다)까지 받았으며 계속 여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인간의 성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호적제도하에 있어서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생학적 성(性)인 성염색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다른 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비록 항고인이 출생 당시 확인된 성인 남성으로서의 외형적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여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을지라도 항고인의 성염색체 구성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남성의 성염색체 구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항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나 사유는 정신의학적으로 성적동일화(性的同一化)의 이상(異狀)인 변성증(성전환증)이란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데 불과할 뿐 이와 같은 증상이나 사유만을 가지고 곧바로 법적인 성을 결정하는 호적상의 성을 '여'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결국 항고인은 여전히 법적으로 남성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고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 신청은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이를 다투는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세욱(재판장) 김주택 강성명

[첨 부 3] 호적 정정 신청서 및 수기

상수리

Statement & Essay

SANH SOO LEE Statement & Essay.

이탈리아 천문학자 Galilei Galileo,
그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교황청으로부터 처형당하였다.
지동설이 황청에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였기 때문이었다.
400년에 일이다.

김포공항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돌아온 **한복리(가수)연니가** 모습을
나타냈다. Mini-skirt 차림이었다

대서특필한 **신문**은 shocking한 멘트로 떠들썩했거나
30여년전의 일이다.

Mini-skirt는 유교적 관습이 강한 우리 풍토에는 **反社會的**이기
때문이다.

한때는 경찰이 자른다고 다니며 치마깎이를 재고, 거기깎이를
타고, 쫓고 쫓기는 풍경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헌법 제20항과, 유엔인권조약 8조(1)(2)항에 **背馳**되는 일,
리, 오늘날에도 가능한 일일까?!

미문의 Trans-Gender 라리수가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면서,
취소문의 벽에 맞서 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확신하게 보여 주었다.

금년, 리C 쟁개 2001년 사람들이 열광했던 "HOT ISSUE"
사실가, 이미주는 모습, 수술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담보로 해서 원했던 **性正體**는 갖았습니다
한 세대 30여년 전보다는 고정관념의 높은 벽이 낮아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분명한 **反社會的**이고,
Trans-Gender에 관대하지 못한 **공지** 많은 시선이 저변에
깔려 있어 우리들은 숨막히게 한다.

반드시 강한 유교적 관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Trans-Gender라는 **Conception**이 생소하거나, 무지일 것이다.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오지 못하면서 겪은 고통과
애환은 **필연**으로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조바친 따가운 시선, 설악한 시대착오적 편견, 우리들에게
무심코 던진 **공지** 많은 폭언, 화살, 절망, 철저하게 상처를 받아야
했고, 고독과 싸워야 했고, **法과 慣習** (강한 유교적 사상)이라는
이름아래 세상과 맞서야 했고, 국가 사회 이웃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함으로 **암담**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목숨만 붙이고 아픔을
공임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지 Trans-Gender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헌법 10조에 **背馳**되는 일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國民의 政府" "人權政府" 라고들 합니다
2000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人權國家** 라고 합니다.

人權法이 제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시한 2001 11 24)
장관급 초대 국가인권위원장이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Trans-Gender가 이제는 신문 Gossip거리가 아닌 대중모두가
친숙해진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소수의 **性**으로서의 **社會現狀**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언제까지 우등들의 편이 되어 주지는 못할 것
헌법 37조 2항, 유럽인권조약 8조 등은 私生活 自由權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공공안전, 경제복지의 필요가 있다는 이름으로 친박인적인
기본적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받지 않은 권리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성전환을 하고도 法律적으로 그 성으로 保護
받고자 하는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으로도 제한하기
어려다는 法理입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의 1변성은
인정 (미국 15개 주, 프랑스 등) 하고.

특히 독일의 경우, 성전환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효적으로 해결 하였습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성전환으로 질병을 치료한 자들의
法律적 구제 차원에서, 또한 행복추구 (헌법 10조), 사생활
자유보장 (헌법 37조 2항, 유럽인권조약 8조) 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1995. 2. 18 서울지방법원 이남부지법에서는 성전환자의
결혼정정 (남성에서 여성) 하는 신청을 인용한 事實이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박모씨 (46세)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정문을 고찰하자면

(1990. 8. 21) 90브 10결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법

1995. 10. 5 95브 10결정 광주지방법원

양성정정은 성염색체나 임신의 피침 등만으로 남여 구별하는 견해.

1996 6. 11 선고 96브 791결정, 대법원
이 판결은 신체적 성, 정신적 성, 사회적 성 일반인의 권리 등,
모두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견해.

즉, 大法院의 4:1 결정, 성염색체도 개인의 중요한 근거라 하되,
성염색체로만 성을 결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
상수리는 성전환증으로 고통받아 왔고, 성전환수술에 이르게 된 경우,
의료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거친 사실.

동아대학교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성전환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
이고, 원래의 行動 특성 및 시술 당시의 精神的 상태보다

수술 후 여성으로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성전환수술을 받게 되었고, 현재는 여성임을 호소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첨부한 입법자료, 성전환 진단서, 성별감정
서건서, 이사회건서 등 참고)

그리고 성전환 이후 여성으로 완전히 生活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집고 넓어 가 가면

상수리는 4형제중 다른 형제와는 달리 어려서부터 女孺의
놀이를 즐기는데, 여성의 특성에 가깝게 성장하였습니다.

청소년기 상수리는 여성적 특성으로 인하여 男子女子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아버지, 오빠로부터 씩씩하게 남성
답게 성장하라고 꾸지람 듣기는 다반사이었고, 죽지 않는
만큼 세세하게는 물론, 男족주류, 키마, 화장품 등은 男조리
부터이고, ...

심각한 소외감과 좌절을 겪어 왔습니다.
심대한 정신적 고통 (성정체성 문제로)을 겪어 오다가 38세때인
1998. 11. 24 부산 동아 대학교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수술 후 입원실에 돌아온 나는 장벽은 내려 보았다.
12층 아래 은행나무는 꿈에도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죽은 복숭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와 언니랑
작별 인사를 했었는데!?

마취가 풀리고 엄습해오는 진통을 감지하면서, 침대 앞에는
어머니와 언니가 나의 손을 꼭 잡고 개어 나는 상수리의 싹소리를
안도하는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계셨다.

수술 후 10여 일간의 진통으로 나의 특징은 묵묵히 받아 주셨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해심이 큰 언니, 마음씨 좋은 형부가
나를 챙겨 주지 않았으면 ^{안녕} 지금 상수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머니, 언니, 형부 챙겨 주심이 감사합니다.
상수리를 ~~여성~~ 여성으로 만들어 주신 김석권 교수님, 손호성 의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6. Galileo는 세상이 무지했기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윤복희(가수) 언니는 세상이 편견했기때문에, 굶지 않을 때까지
시선을 받았고,

적어도, 21c 초해 ~~성~~ 라리수는 정말 ~~은수~~ 좋은 여성이다
Galileo 때만큼 세상이 무지하지 않고, 윤복희가수님 때 만큼
편견이 상당히 없었기 때문이.

참새를 내기 성계는 필연에 따라 초능적으로 ~~이~~ 변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issue, 법률적 문제 등에 구속되어 있는 사회적 동물
(리비아와 사회성)인 인간에게는 간단하지 않은 벽에 맞서
싸우는 Trans-Gender,
정적 위동이 상처받고, 고통은 곱씹어 세상을 뒤망하는 것은
다만 시대의 사회의상이 변화에 호감이나 맹목은 지체가
크게 못이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아픔에 몰아 넣고 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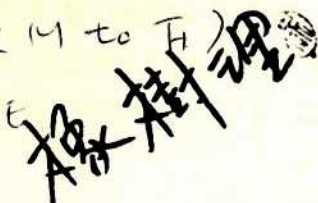
여성이지만, ~~남자~~ 디이다만 했고,
여성이지만 ~~남자~~ 이지 않는 ~~자~~,
성명 ~~역~~에 맞서 다른 Genre에 살고 있는 ~~여성~~ 수많은
Message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대답해야 할 때에 도리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도 중앙훈입구 1층 3611 중앙비서관에 이렇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0조, 고강 작)

누구를 위한 Written Law입니까?

2021. 9. 12.

Trans-Gender (M to F)
SANG SOO LEE 

성 전 환 및 개 명 허 가 신 청

신청인 겸
사건본인

김 ○ ○
주민등록번호 60 -17XXXXX
본적 포항시 남구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신 청 취 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사무소에 비치된 호주 김○○ 의 호적중 신청
인 겸 사건본인 김○○ 의 성별란에 남(男)으로 기재된 것을 여(女)로
정정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 를 ○○으로 개명하는
것을 각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신청의 김○○와 그의 처 신청의 정○○과의 사이
에서 1960년 2월 21일 포항시 남구 _____에서 남자로 출생하였
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일자불상경부터 신체적인 이상으로 호적상
의 성별은 남성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는 전혀 다른 여성으로 성장하면서
소외감과 좌절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던 끝에 여자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하고 1998년 11월 24일 성전환증 환자로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
환술을 실시받아 향후 생활은 여성으로 생활하여야 하며, 현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성임을 확인받기에 이르렀습니다(첨부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참조).
3.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신체적인 이상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 오
면서 공중목욕탕을 찾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다가,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
서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을 결심하고 성전환수술을 받고나
서, 그 동안 여성으로 살아왔고, 여성으로 살아 가고 있으면서도 여자

행세할 수 없었던 과거의 불편을 떨쳐 버리고 현재는 여탕에서 여자들과
같이 목욕을 하고, 세상 어느 여자보다도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신청인 겸 사건본인에게 주어진 현실은, 사실상은 여성으로 살아
왔고 여성으로 살고 앞으로도 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으
로 명백한 여성이면서도 호적상의 성별은 남자로, 이름은 남성적인 종대
로, 주민등록번호는 성별을 나타내는 후단부 일곱글자중 첫자가 1로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 일생을 살아 오면
서 겪은 정신적 육체적 불편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
난 세월동안의 극심한 소외감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성전환수술을 시술하
였으나 앞으로도 호적상의 성별과 사실상의 성별의 상위로 인하여 사회
생활에 여러가지 지장이 막심할 것이 예상되므로 호적상의 성별을 여성
으로 정정하고, 이름을 여성적인 ○○으로 개명하기 위하여 이 신청
을 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부
1. 주민등록등본	1부
1. 신체감정서	1부
1. 진단서	1부
1. 소견서	1부
1. 인우인보증서	1부
1. 인감증명서(보증인)	2부
1. 주민등록등본	2부
1. 경위서	1부
1. 인감증명서(모, 형)	2부
1. 주민등록등본	2부

1999년 10월 일

위 신청인 김 ○ ○ (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귀중

소견서

등록번호 03694077


주민등록번호 60-17

No. 99-000466

환자 주소	부산시 양정동		
환자 성명	김○○	성별 남	생년월일 1960년 월 일
병명	성별감정		
치료소견	상기자는 여성으로 성장하였고 1998. 11 24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술을 실시 받아 향후 생활은 여성으로서 하여야 하므로 현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성임을 확인함.		
	비고		

위와 같이 소견함.

1999년 03월 02일

동아대학교병원 

602-715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T: 247-6600

면허번호 제 26753 호

의사성명 정경우 

의사 소견서

김 ○ ○
60-17

상기 환자는 1998년 부산 동아대학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시행하여 여성으로 살고 있는 성정체성 장애 환자입니다.

현재 정신과 영역은,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들을 치료하여 원래의 성으로 바꿔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성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0. 10.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0

김병후정신과의

김 병 후



면허번호 21138

전화: 323-9197 정신과 전문의 김 병 후

FAX: 325-6105



항 고 장

사건번호 2000호파 295호적정정

신청인 김 ○ ○

사건본인 김 ○ ○

항고취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사무소에 비치된 호주 김○○(김)의오직증 신청인김
사건본인 김○○(김)의 성별란에 남(男)으로 기재된 것을 여(女)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고원인

1. 신청인김 사건본인은 신청의 김 와 그의 처 신청의 정 과의 사이에서 1960
년 2월21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단리에서 남자로 출생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김 사건본인은 일자불상경부터 신체적 이상으로 오직상의 성별은 남성
으로 되어 있으나 여와는 전혀 다른 여성으로 성장하면서, 소외감, 좌절감등은 물론 어머니와
친구들로부터 이유있는 왕따등으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나날을 보내던 끝에 여자
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하고, 1998년 11월 24일 성전환증환자로서 남성이 여성으로 성
전환술을 받아 향후 생활은 여성으로 생활하여야 하며, 현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성성
을 확인 받기에 이르렀습니다(첨부된 성전환증 진단서, 성별감정 소견서)

3. 현재는 대중목욕탕(여탕)에서 여섯 여자들과 자연스럽게 같이 목욕을 하고 세상 어느
여자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해 하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타조와 같이 날지 못하는 새도 있듯이 임신만 불가능할 뿐 평범한 여성으로서 말합니다.

4. 그러나, 신청인김 사건본인에게 주어진 현실은 앞으로도 여성으로 살아가야하는 육체
적 정신적으로도 명백한 여성이면서도 오직상의 성별은 남자로 주민등록번호는 성별을
나타내는 후단부 일곱글자중 첫자가 "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김
사건본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정신적 육체적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입는 피해, 이로 인한 정신적 고뇌로 정신적으로 황폐하여지는 느낌이
거품씩 쓰치면서 절명(자살)해야겠다는 비관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판사님 오직상의 성별과 사실상의 성별의 상위로에서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행복
추구와 기본적 권을 확인 할수 있도록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판사님 오직상의 성별과 사실상의 성별의 상위로에서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행복
추구와 기본적 권을 확인 할수 있도록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서기 20 년 월 일

제항고인 김 ○ ○

대 구 지 방 법 원 처 중